

간접 채널 파트너 계약 – v. AsiaPac 09.15.04

Cisco 에 간접 채널 파트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귀사는 이 간접 채널 파트너 계약(“본 계약”)의 조건을 수락하여야 한다. 본 계약은 “전문서비스제공자” 및 “재판매인”인 등록 파트너에 대해서 적용된다. “전문서비스제공자” 및 “재판매인”은 아래 Part A 에 정의되어 있다.

본 계약은 캘리포니아주 회사로서 170 West Tasman Drive, San Jose, California 95134 가 주된 영업장소인 Cisco Systems, Inc.와 귀하가 해당 파트너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회사(“파트너”) 간에 체결되었다. 파트너가 또한 재판매인(아래에 정의된 바와 같음)인 경우에는, 파트너는 본 계약의 Part B 에서는 재판매인으로 지칭될 수 있다. 본 계약은 귀하가 귀사를 위하여 해당 파트너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Cisco 가 승낙통지를 발송하는 날(“효력발생일”)로부터 그 효력이 있다.

본 계약은 Part 로 나뉘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Part A, 용어의 정의: 모든 등록파트너에 적용된다.

Part B, 재판매인 계약조건: 재판매인으로 활동하는 등록파트너에게만 적용된다.

Part C, 일반 계약조건: 모든 등록파트너에 적용된다.

파트너가 본 계약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효력이 있는 기존계약을 Cisco 와 파트너가 이미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존계약이 본 계약에 우선한다. 기존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그 대상내용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의 최종합의를 구성하며, 당사자간의 사전 구두 또는 서면의 모든 소통사항을 대체하며 배제한다. 재판매인으로 활동하는 등록파트너가 추후 Cisco 와 직접 재판매 계약(이하 “Systems Integrator 계약”)을 체결할 경우 Systems Integrator 계약이 본 계약보다 우선하며 본 계약을 대체한다. 본 계약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여타 어떠한 조건, 이해, 합의, 진술 또는 보장도, 그것이 명시적이건 또는 묵시적이건 간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은, 아래 Part C.11.6 에 따라, Cisco 와 파트너 사이에 체결된 서면 문서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Part A. 용어의 정의.

1. “**부가가치**”라 함은 파트너가 최종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솔루션 중에서 Cisco 의 몫이 아닌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의 예로는 파트너가 Cisco 제품의 최종사용자로부터 받는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판매 전후의 네트워크 디자인, configuration, 고장수리, 및 지원 그리고 보안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들 수 있다. 파트너는 전화를 통한 판매, 카탈로그를 통한 판매 및 인터넷을 통한 판매는, 잠재적 최종사용자 구매인으로부터의 연락이 순전히 파트너의 판매원과 그러한 잠재적 최종사용자의 직접적인 면담 이외의 원인에 기한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파트너는 또한 최종사용자에게 금융옵션 및/또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공식 판매인**”이라 함은 지역내에 있는 판매인 또는 지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판매인으로서, http://tools.cisco.com/WWChannels/LOCATR/jsp/distributor_locator.jsp 에서 확인되거나 또는 Cisco 가 달리 확인하는 판매인을 말한다.
3. “**Cisco 서비스**”라 함은 Cisco 가 최종사용자를 위해 수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하며, 제품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4. “**최종사용자**”라 함은 : (i)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그 내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품 및/또는 Cisco 서비스를 취득하였고, 그리고(ii) 아래의 Part B.3.1 에 따라 재판매인에 의해 그러한 성격의 구매자 또는 라이선스로 확인된 최종 구매자 또는 라인센시를 말한다.

5. “내부용도”라 함은 최종사용자 자신의 내부 용도를 위한 영업목적의 사용을 말하며, 아래에 규정된 재판매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마크”라 함은 파트너가 사용자격이 있는 Cisco 등록 파트너 및 각 Cisco 확인 파트너 마크를 말한다. 그러한 마크 및 해당 자격조건은 Cisco’s web site인 <http://www.cisco.com/go/partnerlogo>에 포함되어 있다.
7. “네트워크 서비스”라 함은 최종사용자에게 인터넷, 자료 및 음성 송신에 대한 접근, 그러한 송신에 관련된 원격통신 서비스, 및 상기사항과 관련한 네트워크 장비의 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부정제품”이라 함은 (i) 마크 또는 기타 Cisco 상표 또는 서비스마크가 Cisco 의 동의없이 부착된 상품; (ii) Cisco 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하거나 Cisco 의 승인없이 생산된 제품; 그리고 (iii) 일반적으로 진짜의 Cisco 제품을 위조하거나 모방할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말한다.
9. “기존계약”이라 함은 Cisco’s System Integrator Agreement, Two-Tier Distributor Agreement 또는 이름은 다르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Cisco c 계약으로서 파트너에게 Cisco 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최종사용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제품”이라 함은 Cisco가 공식판매인으로 하여금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http://www.cisco.com/go/channelprograms>에 기술되어 있는 Cisco 채널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파트너 수준의 등록, 인증, 및/또는 전문성을 취득한 회사들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Cisco 하드웨어 제품, 소프트웨어 제품 및 관련 문서를 말한다.
11. “전문 서비스”라 함은 파트너가 최종사용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판매 전후의 모든 서비스로서 (Cisco 제품에 대한 교육은 제외), Cisco 제품을 위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서비스는 판매 전후의 네트워크 디자인, configuration, 고장수리 및 Cisco 제품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2. “전문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최종사용자에게 그 자신의 판매 전후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등록 파트너를 말한다.
13. “등록 파트너”라 함은 Cisco 등록 수단을 사용하여 등록하고 본 계약의 조건을 승낙한 전문 서비스 제공자 또는 재판매인을 말한다.
14. “등록 파트너 로고”라 함은 “등록 파트너 로고”로서 확인되고 http://www.cisco.com/partner/MWChannels/marketing_promotions/tools/logo에서 찾아볼 수 있는 로고를 말한다.
15. “재판매”는 다음과 같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모든 판매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a) 최종사용자에 대한 그러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소유권(또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그리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이전, 또는 (b) 리스회사와 같은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소유권(또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그리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이전(그 리스회사가 재판매인의 관계인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관계인이 아닌 최종사용자인 경우). 재판매에는 일반공중에 대하여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Cisco 제품 또는 Cisco 서비스를 구입, 사용허가, 재사용허가,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재판매하다”라는 동사는 재판매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16. “재판매인”이라 함은 공식 판매인으로부터 Cisco 서비스나 제품을 구입 및/또는 사용허가 받아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재판매하는 등록 파트너를 말한다.
17. “소프트웨어”라 함은 Cisco 에 의해 개발되고 판매된 기계가 판독가능한(목적코드) 컴퓨터 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를 말한다.
18. “제 3 자 공급 Cisco 제품”이라 함은 파트너가 공식 판매인 이외의 자로부터 구입하는 진짜 Cisco 제품을 말한다. 제 3 자 공급 Cisco 제품은 부정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19. “지역”이라 함은 Cisco 가 승낙한 해당 파트너 등록 신청서에 파트너가 기재한 국가를 말한다.

Part B. 재판매인 계약조건. 이 Part B 는 파트너가 Cisco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 Cisco의 재판매 허가 및 재판매 규칙.

1.1 Cisco의 재판매 허가. 본 계약기간 동안, Cisco는 이에 재판매인에 대하여 공식 판매인으로부터만 Cisco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 및 또는 사용허가 받아 그 Cisco 제품 및 서비스를 지역내에서 사용하고 받을 최종사용자에게 직접 재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2 지역외에서의 재판매 금지. 재판매인은 지역외에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주문을 부탁하거나, 판매원을 고용하거나, 재판매하거나, 또는 창고 기타 판매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3 최종사용자에 대한 판매. 재판매인은, 본 계약에 따라, 최종사용자에 대한 재판매만을 위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취득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재판매인은 Cisco 제품 또는 서비스의 여타 재판매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여타 재판매인이 Cisco 또는 다른 데로부터 제품 또는 서비스를 재판매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재판매, 사용허가, 재사용허가해서는 안된다. Part B.1.3 의 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러한 여타 재판매인이 지역내에서 엄격히 최종사용자로서 그리고 엄격히 내부용도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판매인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역내에서 Cisco 제품 또는 서비스의 여타 재판매인에게 재판매할 수 있다.

1.4 제 3 자 공급 Cisco 제품. 재판매인은 제 3 자 공급 Cisco 제품의 구입은 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러한 3 자 공급 Cisco 제품의 재판매에 관하여는 본 계약에서 부여된 권리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i) 재판매인이 그러한 재판매에 대해 Cisco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을 것; (ii) 재판매인이 그러한 재판매의 최종사용자는 지역내에 있다는 것을 보장할 것; (iii) 재판매인이 최종사용자에게 3 자 공급 Cisco 제품의 상태 및 원천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것; 그리고 (iv) 재판매인이 http://www.cisco.com/warp/public/csc/refurb_equipment/swpolicy.htm에서 볼 수 있는 Cisco의 소프트웨어 양도 및 사용허가 규칙을 준수하고 해당 최종사용자에게 알려줄 것. 3 자 공급 Cisco 제품과 관련하여, Cisco는, 위에서 언급한 소프트웨어 양도 및 사용허가 규칙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그러한 제품이 Cisco 장비 검사를 통과하고 Cisco가 그러한 검사료 및/또는 소프트웨어 사용허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 한, 그러한 제품에 대하여 Cisco 지원을 유보할 권리를 갖는다.

2. **부가가치 요건.** 재판매인이 Cisco 서비스나 제품을 최종사용자에게 재판매할 때마다, 재판매인은 그 부가가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재판매인은 잠재 최종사용자에 대하여 그 잠재 최종사용자의 장소에서 제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재판매인에 의해 재판매된 각 제품을 위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재판매인의 의무.

3.1 판매보고. 재판매인은 (i) 공식 판매인에게 발급한 제품 구매주문서에, 또는 (ii) Cisco 또는 공식 판매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5 일 이내에 서면으로 각 최종사용자의 완전한 성명 및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매인은 Cisco 및/또는 공식 판매인(재판매인이 Cisco 서비스 및 제품을 구입 및/또는 사용허가 받은 재판매인)이 수시로 발행하는 기타 판매보고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공식 판매인과의 계약. 재판매인은 각 공식 판매인이 여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파트너는 각 공식 판매인이 Cisco를 대리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Cisco를 구속하거나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독립된 당사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승낙한다. 따라서, 그러한 계약은, Cisco가 계약의 제 3 수익자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오로지 재판매인과 각 공식 판매인 사이에서만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의문을 없애기 위해, 본 계약은 Cisco와의 판매 또는 구입 계약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Cisco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구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재판매인과 공식 판매인간의 계약은 재판매인과 그 재판매인에 의해 선택된 각 공식 판매인 사이의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3.3 추가요건. 재판매인은, Cisco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정 최종사용자(예컨대, 주정부)에게 제품 또는 Cisco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여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수도 있으며 또한 Cisco와 추가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각 재판매인은 Cisco가 공식 판매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재판매인에게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 전에 재판매인에게 일정한 전문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대정부 판매.

4.1 재판매인은 Cisco의 명시적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미국연방정부 혹은 미국연방의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예를 들면, 대사관, 군부대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들의 조달 정책의 적용을 받는 기관, 부서 또는 기타 조직(지역내에 위치하건 혹은 그 일부 혹은 전부가 위치하건 관계없이)에 제품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판매하거나 유통해서는 안된다.

4.2 대정부의 판매조건. Cisco는, 재판매 목적이건, 내부용도의 목적이건 상관없이, 미국연방정부 연방조달규정(이하 "FARs")과 그 관련 보충규정, 국방부 FARs, 또는 나사(NASA) FARs 등 정부의 flowdown규정을 승낙해서는 안된다. Cisco는 나아가 재판매인이나 재판매인의 최종사용자에게 정부가 요구하는 어떠한 진술이나 확인 도 제공해서는 안된다.

4.3 전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매인은 본 계약 및 Cisco의 해당 자격요건과 적격요건(전술한 공급에 관한 진술 또는 정부의 flowdown조항에 대한 책임배제문구 포함)에 따라, 지역내의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재판매할 수 있다.

5. 가격.

5.1 재판매인 가격. 재판매인이 Cisco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 지급하는 가격은 Cisco 서비스와 제품을 재판매인에게 판매하는 공식 판매인이 결정한다. 재판매인은 일방적으로 재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나, Cisco가 정할 수 있는 재판매가격의 상한선을 넘지 못한다.

5.2 특별가격. Cisco는 재판매인의 공식 판매인에게 그러한 공식 판매인이 재판매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특별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가격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정 최종사용자에 대한 재판매에만 한정된다. Cisco와 재판매인의 공식 판매인 사이에 체결된 그러한 계약은 서면(Cisco로부터의 전자메일에 의한 서면 통지 포함)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러한 특별가격이 제공될 고정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서면계약에 고정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간은 특별가격과 관한 서면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 일의 기간으로 한다. Cisco가 특별가격을 제외하고 재판매인이 그러한 특별가격에 근거하여 재판매인의 공식 판매인에게 구매주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판매인은 Cisco가 특정한 최종사용자에 대해서만 그리고 Cisco가 정한 특정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격으로만 그 제품을 재판매하겠다는 재판매인의 합의를 그러한 특별가격의 제공조건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승낙한다. 그러한 조건은 재판매인이 Cisco가 정한 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5.3 Cisco가 판단컨대 재판매인이 Part B.5.2 에 따라 제공된 특별가격으로 구입한 Cisco 서비스 또는 제품을 Cisco가 지정한 최종사용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재판매한 경우에는, Cisco는 그의 재량으로: (a) 재판매인의 당시의 재판매 할인액과 그러한 추가적인 할인액의 차액을 재판매인에게 청구하거나, 그리고/또는 (b) 재판매인의 구입 및 관련 장부를 Part C.11.8 에 따라 검사하고("검사") 검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Cisco에게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을 재판매인에게 청구하거나, 그리고/또는 (c) 가격차별정책 및 여타 Cisco의 판매 및 마케팅 프로그램에 대한 재판매인의 접근을 중단시키거나, 그리고/또는 (d) 재판매인에 대한 배송을 중단시키거나, 그리고/또는 (e) Part C.2.2 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재판매인의 배포권.

6.1 권리의 수여. 본 계약의 기간 동안, Cisco는 재판매인에게 제품에 포함되거나 내재된 모든 재산적 권리를 공식 판매인으로부터 제공받아 최종사용자에게 배포할 제한적이며, 비전속적이고 취소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재판매인은 본 계약의 종료 후 30 일 동안 그러한 배포를 계속할 수 있다. 본 계약의 Part B.1 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Cisco의 재산적 권리(모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포함하는 제품을 배포해서는 안된다. Cisco 제품은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또는 배포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라이선스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6.2 Cisco의 보유 권리. 전술한 Part B.6.1 에 따라 재판매인에게 제공된 제한된 라이선스를 제외하고는, Cisco는 제품에 포함되거나 내재된 각각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재판매인은 Part B.6.1 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를 여타 재판매인 또는 등록 파트너 등 다른 자에게 배포해서는 안 된다.

6.3 라이선스 제한 및 조건. 재판매인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어떠한 형태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통지, 상표, 로고 또는 기밀유지에 관한 통지를 제거하거나, 변경하거나, 파괴해서는 안된다. 재판매인은 본 Part B.6 에서 구체적으로 허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일부라도 복제하거나 재배포해서는 안된다. 재판매인은 Cisco 또는 공식 판매인을 제외한 다른 원천으로부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제품의 일부로 제공받은 소프트웨어를 포함)를 재배포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재판매인은 소프트웨어를 번역하거나, 역컴파일하거나 또는 해체하지 않을 것이고, 재판매인은 각 최종소비자에게 Cisco가 제공하고 그러한 제품에 수반하는 모든 최종사용자의 라이선스 조건과 최종사용자 관련 문서를 이전해야 한다. 현재 그러한 사용자의 라이선스 조건에 대한 사본은 다음의 URL에서 구할 수 있다:

http://www.cisco.com/univercd/cc/td/doc/es_inpk/cetrans.htm

Part C. 일반 계약조건

1. **파트너 혜택.** 재판매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파트너에게 다음의 혜택이 주어진다:

1.1 Cisco.com 에 대한 접근. 파트너는 Cisco.com 웹사이트 상의 정보와 도구들에 대해 파트너 수준의 접근권을 가진다. (전에 "CCO"로 지칭되었음). 단, 파트너에 의한 그러한 정보의 사용은

Cisco.com 의 조건 및 Part C.4 에 명시된 본 계약의 기밀유지의무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1.2 파트너 검색 목록. 파트너가 Cisco에게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Cisco는 파트너를 Cisco.com 웹사이트 상의 파트너 검색 도구 모음에 포함할 수 있다;

1.3 등록 파트너 로고. Part C.3 의 적용하에서 파트너는 지역내에서 Cisco 제품, Cisco 서비스 및 전문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 파트너 로고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1.4 파트너 E-Learning Access. 파트너는 Cisco가 지역내의 파트너에게 가용하게 하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파트너 E-Learning Access에 등록할 권리를 가진다.

2. 기간과 종료.

2.1 기간. 본 계약은 다음 (1), (2) 중 나중에 발생하는 상황에 의해 Cisco의 승낙이 있는 날로부터 1년 후에 만료된다: (1) 양당사자의 서면 계약에 의해 달리 연장되지 않거나, 본 계약에 따라 조기에 해지되지 않음 (2) 파트너의 최근 인증 또는 전문화자격이 만료됨

2.2 해지. 어느 일방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의 서면 통지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혹은 아무 사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파트너의 본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Cisco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10일의 통지로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Cisco는 파트너가 Parts B.1.4, B.2, B.5.2, B.5.3, B.6, C.3, C.4, C.9 및 C.11.8 중 어느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3 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해지 또는 기간 만료되는 경우, 파트너가 어떠한 공식 판매인으로부터 Cisco 서비스와 제품을 구입할 권리는 즉시 종료되고, Cisco는 Part C.1 에 따라 파트너에게 부여된 모든 혜택을 중단시킬 것이며, 파트너는 (a) Cisco 등록 파트너임을 스스로 표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그리고 (b) 어떠한 마크의 사용도 중단하여야 한다.

3. 등록 파트너 로고 및 마크의 사용.

3.1 Cisco는 본 계약 기간 동안, 최종사용자에 대한 Cisco 제품과 Cisco 서비스의 재판매를 위해서만 등록 파트너 로고 등의 마크를 사용할 권리를 파트너에게 수여한다. 단, 그러한 재판매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른다. 파트너는 어떠한 제품에도 Cisco의 상표와 서비스 마크를 부착해서는 안된다. 파트너가 마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URL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www.cisco.com/go/partnerlogo

파트너는 또한 마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URL에서 명시된 상호사용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http://www.cisco.com/로고/trademark.pdf>

3.2 파트너는 부정제품을 취득, 사용, 판촉하거나 재판매해서는 안된다. 파트너는 또한 부정 제품을 제 3자가 점유하고 있거나, 그 존재 및 점유사실이 의심스러운 경우, Cisco에게 즉각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Cisco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제품을 점유하고 있는 제 3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Cisco에게 협조하는데 동의한다.

3.3 파트너가 부정제품을 취득, 사용, 판촉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Cisco는 Cisco의 재량에 따라 다음 조치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취할 수 있다: (i) Cisco의 요구가 있는 후 10일 이내에 파트너에게 그가 최종사용자에게 판매했던 모든 부정제품을 리콜하거나 파기하도록 요구하거나, (ii) 파트너에게 Cisco의 서면 요구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모든 파트너의 부정제품 취득과 관련한 모든

상세 내역(공급자, 공급내역, 파트너가 부정제품을 재판매한 모든 구매자 등)을 Cisco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그리고/또는 (iii) Part C.2 에 따라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기밀유지와 정보의 공개.** 파트너가 Cisco로부터 기밀정보로 표시된 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 파트너는 자기 소유의 영업정보를 보호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 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의무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Cisco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다른 제 3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 파트너는 Cisco 제품과 서비스의 판촉 및 재판매와 관련하여서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 만료되는 경우, 파트너는 Cisco가 파트너에게 제공한 기밀정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Cisco 또는 파트너는 다른 당사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파트너를 권한 있는 또는 등록된 파트너로 확인하는 내용의 언론 발표 또는 기타 대중에 대한 발표를 해서는 안된다. 파트너는 또한 Cisco의 명성에 해가 되거나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거나, 공표 기타 다른 의사 전달을 해서는 안된다.(제 3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취하거나, 공표하거나 기타 다른 의사 전달을 하게 해서도 안된다)
5. **정보에 대한 라이선스.** Cisco.com 을 통해 파트너에게 가용한 정보는 Cisco.com 의 “중요사항 통지”에 포함된 조건과 Cisco.com 을 통해 파트너에게 통지한 추가적인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Cisco.com 을 통해 제공된 정보는 파트너의 Cisco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재판매 및 판매 촉진과 관련하여서만 사용될 수 있다.
6. **제한적 품질보증 / 품질보증책임 배제.**
 - 6.1 **품질보증.** 제품에 대하여 Cisco가 제공하는 유일한 품질보증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서면의 제한적 품질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가 제품과 함께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URL에서 입수가 가능한 제한적 품질보증서이다. <http://www.cisco.com/public/limited-warranty.html>.
 - 6.2 **책임배제.** 위 C.6.1 항에 특정된 제한적 품질보증서에 특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성, 특정 목적 적합성 (CISCO에게 알려진 경우라 할지라도), 침해부존재, 품질만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묵시적 보증 또는 조건 또는 거래과정, 법률, 사용 또는 거래관행에서 야기되는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 진술 또는 보증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 한도에서 배제된다. 묵시적 품질보증은 배제될 수 없는 한도에서, 그러한 품질보증은 위C.6.1 항에 특정된 제한적 품질보증서에 기재된 90 일 기간으로 한정된다. 본 책임배제조항은 위에 규정된 명시적 품질보증에 그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6.3 파트너는 CISCO를 위하여 C.6.1 항에 기재된 제한적 품질보증을 초과하는 어떠한 품질보증 약속을 하여서는 안된다. 파트너는 C.6.1 항에 기재된 제한적 품질보증을 초과하는 파트너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떠한 품질보증으로부터도 CISCO를 면책함에 동의한다.
7. **책임의 제한.** 본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또는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청구에 대한 CISCO 와 그의 공급자의 모든 책임은 파트너가 그 의무를 발생시킨 사건 또는 사정에 선행하는 3 개월간 CISCO 서비스 및 제품을 위하여 그 공식 판매인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본 의무의 제한 규정은 중첩적으로 적용되며 개별사건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8. **특별손해의 포기.** 어떠한 경우에도 CISCO 또는 그의 공급자는, CISCO 또는 그의 공급자가 그 가능성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불법행위(과실로 인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어떠한 부수적, 특별, 간접, 징벌적 또는 특별 손해, 수입손실, 일실이익, 또는 데이터 손실 혹은 훼손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9. **수출 제한 및 통제.**

9.1 수출 제한. Cisco의 지구 부사장의 명시적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파트너는 지역 밖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없다.

9.2 수출 통제. 파트너는 본 계약에 의하여 그가 구입하고 재판매하는 제품 및 기술 또는 그 직접 산물("제품 및 기술")은 지역 및 미합중국(미국)의 법률 및 규제하의 수출통제 대상임을 인정한다. 파트너는 CISCO 제품 및 기술의 사용, 수출, 재수출 및 이전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고, 모든 필요한 미국 및 당해국의 인증, 허가 또는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CISCO와 파트너는 이러한 인증 및 자격의 취득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함에 합의하며 모든 필요한 지원문서를 취득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행위를 하기로 한다. 파트너는 미국 및 당해국 법률에 따라 구매 및 전개 또는 배포된 제품 및 기술의 수출, 재수출 및 이전에 관한 완전하고, 진정하며 정확한 기록을 그러한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이 이루어진 날부터 최소 5년간 유지함에 합의한다. 파트너는 미국의 사용, 수출, 재수출 및 이전에 관한 법률의 준수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다음 URL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http://www.cisco.com/www/export/compliance_provision.html.

본 항에 의한 파트너의 의무는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된 후에도 지속된다.

10. 연락 정보 유지의 의무

10.1 필수 유지. 2004년 9월 20일 이후부터 파트너는 자사에 귀속되어 있는 유효한 연락 정보를 최소 한 건 이상 Cisco 채널 파트너 데이터베이스에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10.2 유효한 연락 정보. 파트너 셀프 서비스("PSS")의 데이터관리툴을 통하여 관리되는 파트너의 연락 정보는 이름, 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Cisco의 채널 파트너 데이터베이스 ("CPD")에 유지되어야 그 정보가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최근의 연락 정보가 PSS의 툴을 통해 CPD에서 삭제되었을 경우, Cisco는 해당 파트너를 CPD에서 삭제할 것이다. 삭제된 후에 파트너 지위를 재획득하고자 하는 업체의 사용자는 새로이 파트너 지위를 획득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파트너 등록을 하여야 한다.

10.3 Cisco의 권한. 충분한 연락 정보를 유지하지 아니한 파트너에 대해서 Cisco는 그 고유 권한으로 언제라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Cisco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할 수 있다. 한편, PSS상에서의 불충분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연락 정보로 인하여 Cisco가 Cisco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파트너를 삭제하는 경우에, Cisco가 해당 파트너에 대하여 특정한 형식으로 이와 같은 사항을 공지하는 것은 Cisco의 선택 사항이며, Cisco는 삭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파트너에 대하여 공지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10.4 파트너 삭제의 효과. 상기한 사항과 관련하여 Cisco가 파트너를 CPD에서 삭제하는 경우, 혹은 해당 파트너의 파트너 지위가 CPD에서 다른 원인으로 하여 삭제되었을 경우, 동 계약은 그와 동시에 해지된다.

11. 기타.

11.1 준거법. 본 계약의 유효성, 해석 및 집행은 국제사법상 원칙을 배제하고 마치 캘리포니아 내에서만 완전히 실행되는 것처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며, 캘리포니아의 주법원 및 연방법원이 아래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서 야기되는 모든 청구에 대한 배타적 관할을 가진다.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의 소유권 침해 주장과 관련하여 적합한 관할의 어떠한 법원에도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해석 또는 집행에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적용을

부인한다.

11.2 양도.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의한 모든 권리는 Cisco의 명시적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파트너에게 양도될 수 없다. 위 문장에 상충되는 양도를 시도하면 본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이러한 양도는 법적효력이 없다.

11.3 당사자들의 관계, 파트너십의 부존재.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독립적인 계약자이다. 본 계약은 대리인, 동업, 합작, 고용, 또는 프랜차이즈 관계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또한, Cisco와 파트너의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관계가 창설되지 아니한다. 파트너는 노동법 및/또는 사회보장 관련 규제를 포함하는 관련 법률을 파트너가 준수하지 않음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모든 행위 또는 청구를 포함하여 파트너의 근로자가 제기하는 모든 청구 또는 사법행위로부터 Cisco를 면책한다. 어느 당사자도 어떠한 점에서든 다른 당사자를 위한 어떠한 성질의 의무를 인수 또는 창설하거나, 다른 당사자를 구속하는 권리 또는 권한이 없으며 이러한 인수 또는 창설 내지 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서 "파트너"라는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그들 사이에서 동업의 법률관계를 창설할 의도가 없으며, 또한 이러한 법률관계가 그들 사이에서 존재함을 제 3자에게 주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장해서는 안된다.

11.4 효력의 존속. Part A 및 B.3, B.4, B.6.2, B.6.3, C.2, C.3.3 및 C.4 내지 C.11 는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

11.5 통지.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통지는 (a) 파트너가 하는 경우 contract-notice@cisco.com로 하며 (b) Cisco가 하는 경우 파트너가 파트너등록 신청시에 제공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한다. 통지는 이메일로 송부된 후 1 영업일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11.6 집행가능성. 파트너는 그가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는 파트너를 위하여 본 계약 및 모든 변경을 체결할 자격과 권한이 있는 사람에 상응하는 것임을 합의한다. 파트너와 CISCO는 파트너에 의한 본 계약의 전자 송부 및 전자 승인으로부터 야기되는 본 계약의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만일 파트너가 본 계약을 증거하는 물리적 서면을 필요로 하는 경우, 파트너는 (i) 승인된 약정을 인쇄하거나 (ii) CISCO에게 서명본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재판매자는 본 계약의 인쇄된 체결 정보 2 부를 인쇄하여 CISCO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쇄된 정보는 CISCO가 서명한 정보 1 부를 파트너에게 제출하지 않는 한 CISCO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11.7 법률 준수: 본 계약을 실행함에 있어, 파트너는 제품의 포장, 재판매 또는 사용에 적용되는 재활용 또는 수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정부 또는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법률, 모든 등록, 허가, 승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통신 법률, 뇌물방지 법률 및 기타 법률 및 규제하에서 제품 사용에 적용되는 요구사항 등 제품이 판매 또는 사용되고 있는 곳의 모든 정부 또는 관련 당국의 모든 법률, 규칙, 정책 및 절차(총칭하여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트너는 사업의 획득 또는 유지 과정에서 파트너 또는 Cisco 를 돕기 위하여 정부, 정당 또는 이의 기구의 어떠한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것을 제공, 증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당국의 뇌물방지 법률 또는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의 위반의 책임을 지게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허용 또는 수권하지 아니하며, Cisco 제품 및/또는 Cisco 서비스의 판매 또는 배포와 관련하여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Cisco로 하여금 위반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파트너는 파트너에 의한 관련 법률의 위반으로부터 Cisco를 면책하여야 한다.

11.8 감사.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서, Cisco 마케팅 및 판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사용 및 이전, 최종사용자 성명 및 소재지, 및 Cisco 제품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구입되고 재판매된 Cisco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완전하고, 진정하며 정확한 기록 및 회계를 보존하여야 한다. 15 일 전의 서면 통지가 있는 경우, 파트너는 이러한 기록을 정규

영업시간에 파트너가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장소에서 Cisco의 감사를 위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트너는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밝혀 낸 감사의 수행에서 Cisco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파트너는 Cisco 또는 그의 독립 감사인이 수시로 파트너 및 그의 권한있는 공급처가 Cisco의 정책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감시하고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특정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감사는 비정규 제품의 획득, 사용, 홍보 또는 재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검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파트너는 Cisco의 감사인과 협력하여야 하며 정확하고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파트너는 B.1.2, B.1.4, B.5.2, C.3, and C.11.7.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파트너에 의한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밝혀 낸 감사 및/또는 감사의 수행에서 Cisco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 수수료 및 경비를 부담하고 Cisco에게 즉시 지급한다. 파트너는 상기 감사권에 추가하여, Cisco는 파트너에 의한 B.1, B.5, C.3 and C.11 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본 계약 및 Cisco의 정책의 준수 또는 비준수에 관하여 최종사용자를 확정하고 그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하여 어느 최종사용자나 어느 때에도 직접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승낙한다.

11.9 URL. 파트너는 본 계약에 기재된 CISCO가 제공하는 월드 와이드 web sites/URLs/addresses/pages 상의 정보를 접근할 능력이 있고, 접근하였으며, 읽고 동의하였음을 확인한다. 파트너는 CISCO가 재판매자에게 통지함이 없이 URL주소를 변경하거나 어떤 인터넷 주소상의 정보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11.10 기타 구제수단. 본 계약에 특정된 CISCO의 구제수단은 CISCO에게 가능한 다른 권리 및 구제수단(CISCO는 이를 명시적으로 유보한다)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한하지 아니한다.

11.11 각 조항의 독립성.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규제당국 또는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의하여 불법 또는 기타 집행가능성이 없게 되거나 선고되는 경우, 그러한 조항은 무효이며 본 계약에서 삭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은 모두 유효한 것으로 남는다.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항이 적용되어 그 결과로서 본 계약의 가치가 각 당사자에게 있어서 중대하게 훼손된다면, 그러한 당사자가 단독의 재량으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